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000호

「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
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
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최근 자동차 사고피해자 공제금 지급증가 및 방만 경영 등 재무건전성
악화 추세에 따라 공제조합 관리·감독의 중요성 증대
- 공제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실행을 위해서는
검사의 방법과 절차,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필요
- 공제계약자 및 자동차 사고피해자 등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
차손배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검사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건전경영 유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(안 제4조)
- 나. 공정한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원의 적극적 검사행위에 대하여 면책사유 부여(안 제5조)
- 다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검사대상기관 및 취약부분에 대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(안 제6조)
- 라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매년 검사대상기관, 검사 시기, 주요 검사범위 등에 대한 연간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(안 제7조)
- 마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관리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검사기법 연구개발 의무 부여(안 제11조~제12조)
- 바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(안 제13조~제14조)
- 사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조치한 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이행상황 관리(안 제15조)
- 아. 검사대상기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의 발견 및 소속 임직원의 금융사고 등 주요 정보사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내부통제 강화(안 제16조~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운영보험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- 2) 팩스 : (044) 201 - 5587
- 3) 전자우편(이메일) : demi2114@korea.kr, pkm0903@korea.kr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(전화 : (044) 201-4871, 487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